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31호 2016. 1. 8(금)

공 고

- 사천시 공고 제2016-35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수
공표----- 2
- 사천시 공고 제2016-37호 조례제정·개폐 및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등 공표
----- 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431호(2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 2016-35호

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수 공표

주민투표법 제9조 및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주민투표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	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
97,142명 (내국인 93,993 /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61 / 외국인 3,088)	10,794명 이상

- ▲ 내국인 :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천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(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)
- ▲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: 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지자체의 ‘국내거소신고인명부’에 올라있는 재외국민
- ▲ 외국인 : 2015년 12월 31일 현재 사천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
- ▲ 사천시주민투표조례 제5조(투표청구 주민수) : 주민투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청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9분의 1로 한다.

2016년 1월 8일

사 천 시 장

사 천 시 공 보

제431호(3)

공 고

사천시 공고 제2016-37호

조례제정·개폐 및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 등 공표

지방자치법 제15조의1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,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제7조의 규정에 의거 **2015년 12월 31일 현재** 19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- 다 음 -

구 분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19세 이상의 주민수	비고
	95,262명	1,907명	

2016. 1. 8.

사 천 시 장

사 천 시 공 보

제431호(4)

▣ 시 장

(단위 : 명)

구 분	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	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 인수		비 고
			최소기준	15/100 산 정수	
읍면동					
계		95,262		14,289	
사천시	사천읍	14,803	953		`-5개이상의읍면동 에서읍면동별각각 최소기준이상의 서명과청구권자 총수의15/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함.
	정동면	8,658	953		
	사남면	10,870	953		
	용현면	6,910	953		
	축동면	1,826	274		
	곤양면	3,554	534		`-1만분의5미만인경우에 서명을받아야할 서명인의수는 1만분의5로한다. (5÷10,000)× 95,262명=47명 (우리시없음)
	곤명면	2,952	443		
	서포면	3,580	537		
	동서동	7,155	953		
	선구동	5,270	791		`-1천분의10을초과 하는경우에서명을받아 야할서명인수는 1만분의100으로한다. (10÷1,000)× 95,262명=953명
	동서금동	5,038	756		
	별용동	13,641	953		
	향촌동	6,049	908		
남양동	4,956	744			

사 천 시 공 보

제431호(5)

▣ 시의회 의원

(단위 : 명)

선 거 구	읍면동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총수	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		비 고
			최소기준	20/100 산정수	
합 계		95,262		19,052	
가 선거구	계	41,241		8,249	`-2개이상의읍면별로각각최소 기준이상의서명과청구권자총수 의 20/100이상서명을받아야함 `-1만분의100을초과하는경우에 서명을받아야할서명인수는 1만분의100으로한다. (100÷10,000)×41,241=413명
	사천읍	14,803	413		
	정동면	8,658	413		
	사남면	10,870	413		
	용현면	6,910	413		
나 선거구	계	11,912		2,383	`-2개이상의면별로각각최소기 준이상의서명과청구권자총수의 20/100이상서명을받아야함 `-1만분의100을초과하는경우에 서명을받아야할서명인수는 1만분의100으로한다. (100÷10,000)×11,912명=120명
	축동면	1,826	120		
	곤양면	3,554	120		
	곤명면	2,952	120		
	서포면	3,580	120		
다 선거구	계	17,381		3,477	`-1개이상의동별로각각최소기 준이상의서명과청구권자총수의 20/100이상서명을받아야함 `-1만분의100을초과하는경우에 서명을받아야할서명인수는 1만분의100으로한다. (100÷10,000)×17,381명=174명
	동서동	7,155	174		
	선구동	5,270	174		
	남양동	4,956	174		
라 선거구	계	24,728		4,946	`-1개이상의동별로각각최소기 준이상의서명과청구권자총수의 20/100이상서명을받아야함 `-1만분의100을초과하는경우에 서명을받아야할서명인수는 1만분의100으로한다. (100÷10,000)×24,728명=248명
	동서금동	5,038	248		
	벌용동	13,641	248		
	향촌동	6,049	248		